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597
----------	------

2024년 3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성흠제 의원 외 23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3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장의 음주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14. ~ 2024. 2. 1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제출의견: 수정가결¹⁾

- 조례 개정안 제14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자는 매 운행 전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기술발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등)과 타 법령 개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전산시스템 구축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많고, 시차제 근무를 하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음주 운행 방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움

1)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서울시 택시정책과-6957호, 2024.2.22.)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가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운행 업무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 설치와 근무 투입 전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2)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 대상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3)에서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음주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42개소 중 음주측정기는 단 4개소에만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음주 측정 및 기록관리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4)한 바 있고, 이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별로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추가 도입하고 음주 여부를 상시 점검5)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서울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과 「철도안전법」 7) 등에 따라 각 운송수단별 운송종사자의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4)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서울시설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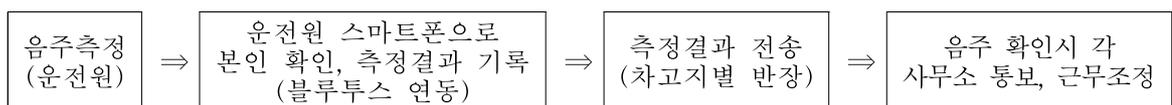
- 장애인 콜택시 총 42개 차고지 중 4개 차고지에 음주측정기 4대만 구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현실화 필요 (성함제 의원)

5) 운행 전 음주측정 일상화를 통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2024. 1. 서울시설공단)

- 음주측정 실시: 운행 전 자가점검 실시(42개 전 차고지 음주측정기 운영 예정)

- 음주측정기 구비 개선 방안: (기존) 설치형 음주측정기 4대 구비(4개 차고지) ⇒ (개선) 휴대용 음주측정기 41대 구매 후 미설치 차고지에 배부

- 운영방안 [※ 측정주기: 매일(각 운전원 운행 전 음주측정 실시)]



- 음주 적발 시: 해당 운전원 차량운행 제한(개인휴무 등 사용)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⁸⁾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가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및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운전자 음주 측정, 기록관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수단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⑪ 생략

-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7)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①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③ 생략

-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정의) 1. 생략

-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수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있다는 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 업무 전 운전자의 음주 측정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장애인콜택시 여건상 차고지가 많고 시차제 근무 등에 따른 여건을 고려할 때 음주 운행 방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¹⁰⁾을 제출하였으나,

시스템을 통한 음주 측정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운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10) 주석 1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9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승미,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한 신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장의 음주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u>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 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특별교통수단¹⁾의 운영)제3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단,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은 담당 부서 확인 결과 현시점에서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나. 전제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대형 음주 측정기 6대와 간이용 음주측정기 40대 구매를 전제
- 대형 음주 측정기는 1대당 3,000천원, 간이용 음주 측정기는 1대당 120천원으로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합계) ≍ 114,000천원(연평균 22,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소계(b)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 총 비용(b-a)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4. 덧붙이는 의견

- 음주측정기 지원 범위 및 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1)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 이동법」제2조 제8호)을 말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제3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14,000천원(연평균 22,800천원)
= 22,800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소계(b)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 총 비용(b-a)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 음주 측정기 구매 ≍ 114,000천원
= (3,000원 × 6대 + 120천원 × 40대) × 5년